# 제1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8. 2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8월 26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원장 손 병 두 부위원장 0] 성 호 위 원 최 위 훈 원 윤 석 헌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원 영 위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14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 및 제4차 금융위 서면 회의 회의록과 2020년도 제15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0년도 제14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 및 제4차 금융위 서면 회의 회의록과 2020년도 제15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 결과는 차기회의에 보고
  -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85호 『루미너스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를 미이행한 루미너스투자자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286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자본시장법상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용
  - (위원)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이 앞으로 조치명령권을 행사 하려면 그런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화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렇게 보면 수단의 보충성, 침해 최소성 등이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있음.
  - (보고자) 조치명령권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수단의 보충성, 침해 최소성, 명확성이라는 행위원칙을 규정함. 다만 조치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실제금융당국에 이 권한을 발동할 때 제약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87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정비하는 등 회계개혁 시장 안착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8호 <b>『공인회계사 ㅇㅇㅇ에 대한 징계의결안』</b>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ul><li>※ 공인회계사 ○○○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여 직무정지 6월을 부과하는 내용</li></ul>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9호 『KB금융지주㈜의 푸르덴셜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숭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KB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제출한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0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8월27일 시행 예정인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감독규정 제정안 내용
- (위원) 최근 금융권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LTV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P2P대출에서는 LTV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면 별도 LTV규제가 없을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P2P대출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P2P대출에 대해서도 LTV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 (보고자) LTV, DSR 같은 규제들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그래서 자기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경우에만 LTV 70% 규제를 하기로 했음. P2P대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0% 이상이고 대부분 3개월~6개월 정도 단기상품임. 그래서 통칭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한범용우회로로 쓰이기에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음. 그리고작년 12·16대책 이후에 P2P업계에서도 이 대책에 뜻을 같이 해서 작년 12월 23일에 P2P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시행한 바 있음. P2P법이 시행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움직임을보고 난 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91호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이행지원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 '21년에 발행하는 기안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에 대한 의견안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92호 **『광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광주은행 직원에 대한 신분제재를 하는 내용
  - (위원) 검사 당시, 실명확인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다른 서류는 다 갖추었는데 주민등록표등본이 발급된 지 3개월 이상 지난 것만 문제가 되었는지?
  - (보고자) 3개월이 경과한 부분과 관련하여 명의인의 의사에 합치되는 금융거래인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임.
  - (위원) 주민등록표등본이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명의인의 의사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후에도 의사확인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 (보고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되는 금융거래로 볼 정황은 존재함. 다만, 명의인이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확인을 거절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을 통해 명의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위원)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할 때 날짜가 잘못된 것을 알 고 고의로 그것을 그냥 받아줬는지 아니면 당시에는 잘 모 르고 과실로 업무처리를 한 것인지?
- (보고자) 행원 ○○○이 해당지점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실 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위원) 그렇다면 계좌개설과 관련해서 과실만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명의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한 거래임을 확인해 주지 않은 사례로 보임. 지난 제12차 금융위원회에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고 제3자 요청으로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서 계좌를 개설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감봉 3월'을 '감봉 1월'로 수정의결한 사례가 있었음. 이번사례도 위반 정도나 참작할 사유의 존재가 크게 차이나지않기 때문에 제재수준을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수정의결 하는 것을 제안함.
- (보고자) 과거 조치사례도 있고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명의인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 없음.

- (위원) 조치대상자 ○○○의 실명확인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조치대상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재수준을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함.
- ㅇ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수정\*의결함

-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293호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행위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 (보고자) IRP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Email 정보를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이 IRP가입자의 회사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DB의 정보에 오류가 있었음. 그래서 그오류에 따라 가입자의 Email 주소가 잘못되어서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 것임.
  - (위원) Email 발송 여부가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금융법이 아니고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어떻게보면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식으로 금융기관에 교육실시의무를 부여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 건과 비슷한 사

례가 있었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가입자가 "자꾸 그렇게 쓸데없이 자료 보내지 말라."고 해서 거부한 경우에도 교육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Email을 안 보냈기 때문에 과태료를 1억 원이나 부과해야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법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와 귀책사유 부분을 협의해서 한다든지, IRP진행 상황에 대해 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가입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단순히 Email로만 왔다 갔다하는 정도를 가지고 법에 놓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음.

- (보고자) 금융위·금감원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음.
- (위원)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금 융위와 금감원이 고민해 주시기 바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94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20.4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국내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완화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워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5호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4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외화 유동성커버리 지비율(LCR) 완화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6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모집, 보험요율, 기초서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7호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한화손해보험㈜이 위험관리책임자 보수 기준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98호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99호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케이비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보험금을 부당 과소 지급하여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과 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00호 『삼성생명보험㈜의 자회사인 삼성에스알에이 자산운용㈜에 대한 업무추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삼성생명 자회사인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의 자산관리회사 업무추가를 승인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01호 『페퍼유럽의 페퍼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페퍼유럽의 페퍼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워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02호 『ㅇㅇㅇ 외 1인의 삼정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ㅇㅇㅇ 외 1인의 삼정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03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 보고안건 제27호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신협중앙회의 '19년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 □ 보고안건 제28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금년 4월 보고 드린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세부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기한부 조치의 기한연장 등 보완방안을 마련 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 ※ (안건 심의 후 위원장 한 말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 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연 화 조치'의 연장·보완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 로 점검해 주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대출 만기연장 및 이 자상환 유예 조치'의 경우에도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 큼 이에 대해서는 금명간 확정 발표할 예정임.

- □ 보고안건 제29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1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33분 폐회)